

카자흐스탄의 신 지하자원법안 개요

이재호 · 허철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Overview of the New Draft Subsurface Law, Kazakhstan

Jae-Ho Lee and Chul-Ho Heo*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Daejeon 305-350, Korea

1. 서 론

카자흐스탄은 아직 완전하게 개발되지 않은 막대한 양의 석유, 가스, 금 및 기타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국가이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국가 중의 하나로 석유, 가스, 금, 우라늄, 동, 아연, 철광석 및 기타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절대 및 1인당(총 인구 약 15백만명) 보유량으로 세계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국가이다(Lee *et al.*, 2007).

카자흐스탄의 광업회사들은 지하자원 이용자로 불리고 있는데, 이들은 국가의 광물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하자원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카자흐스탄은 현재 지하자원 이용자의 활동 규정과 관련된 새로운 법령을 개발하고 있다. 새로운 지하자원법은 1995년 7월 20일에 제정된 석유법, 1996년 1월 27일에 제정된 지하자원법과 2005년 7월 8일에 제정된 생산물분배협약(Production Sharing Agreement,

PSA)을 대신 할 것이다.

자원개발과 관련된 계약 체결방법은 PSA와 '정상' 소득으로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이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초과이윤세(Excess Profit Tax, EPT) 계약이 있었는데, 새 법령은 자원산업에서 PSA를 폐기하고 EPT 계약형식만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생산물분배계약이란 투자자가 광물의 조사, 탐광, 개발, 생산비용을 부담하고 이에 따른 위험을 인수하는 대신, 생산광물에서 조세(채굴세) 및 투입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생산물을 계약에서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방인 국가와 일정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의 자원개발계약을 말한다.

2. 소유권

카자흐스탄 법령에 따라, 지하자원은 항상 공화국 소유이며, 지표 아래에서 추출된 광물질은 지하자원 이

Table 1. Ownership rights related to the subsurface and subsurface use

	Ownership	Comments
- Subsurface	- Republic of Kazakhstan	
- Mineral materials	- Subsurface user	
- Man-triggered mineral formations and industrial water	- Subsurface user	
- Man-triggered mineral formations, stored before 30 May 1992	- Republic of Kazakhstan	
- Minerals from man-triggered mineral formations	- As agreed in Contract	
- Information on geological structure of deposit, contained minerals, volume of reserves, development conditions, etc	- Republic of Kazakhstan, if obtained at cost of the Government; Subsurface user, if obtained at cost of Subsurface user	- Independently from the ownership, geological and other subsurface-related information is kept and systemized by Competent body

*Corresponding author: chheo@kigam.re.kr

용자에 속한다. Table 1은 지하자원이용과 관련된 소유권을 요약한 것이다.

3. 규제기관

지하자원이용권을 취득하고 계약을 이행할 때, 이용자는 다른 공인된 규제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새로운

법령에 따르면, 자원관련 회사는 정부예산을 이행에 관한 공인기관, 경제기획에 관한 공인기관, 지하자원이용권을 부여하는 입찰위원회, 지하자원이용관련 국영기업, 연구 및 지하자원이용을위한 공인기관, 환경보호관련 공인기관, 전문기관, 그리고 지하자원이용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와 함께 일을 진행해야 한다. 기관별 담당업무 및 역할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Regulatory bodies in the mining sector

Authority	Description and role	Comments
Authorized body on implementing state budget	The central executive bod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which leads and coordinates efforts in the sphere of budget execution	Currentl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Budget Planning
Authorized body on economic planning	State bod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which manages activities in the sphere of economic and budget planning	Currentl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Budget Planning
Tender commission on granting subsurface use right	Permanent joint body, created on the basis of the order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subsurface use right tenders and determining the tender winner to be granted the subsurface use right	
National Company on subsurface use	A joint-stock company formed pursuant to a decision of the Government, whose sole shareholder is the state or a national holding company, which carries out activities in certain subsurface use spheres on the terms established by the Republic of Kazakhstan legislation	The creation of a national mining company was approved by the Government and will soon be implemented in the framework of Samruk Kazyna National Welfare Fund
Authorized body for studies and subsurface use	A governmental authority exercising regulation in the sphere of geological studies and efficient and complex utilization of subsurface	Currently, the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Authorized body in the spher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central executive bod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which carries out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policies in the spher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Currently, the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Competent body	A state body, appoint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perating on behalf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in the exercise of rights associated with the conclusion and implementation of contracts;	In most cases, the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Expert commission on subsurface use issues	Consultative body, created on the basis of the decision of the and under the Competent body, which prepares proposals to Competent Body on certain issues, as required by the Competent Body	
Interdepartmental commission on the issues related to realization of the pre-emptive right of the State	Consultative body, created on the order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the purpose of consideration and preparing proposals about the acquisition (waving acquisition) by the state of the alienable right of subsurface user (its part) and/or shareholdings in a legal entity, which possesses the subsurface use right and legal entity, which has the capability to directly and/or indirectly make decisions and/or to have an effect on those decisions of a subsurface user	
Authorized organ in the region of industrial safety	State bod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which manages activities in the sphere of industrial safety	Currently, the Ministry of Emergency
Central commission for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minerals (CCE)	The joint body of the authorized body for studies and subsurface use, responsible for examination of draft documents on exploration appraisal and development of the mineral deposits	

4. 카자흐스탄의 선취권(신주 우선 인수권)

카자흐스탄공화국은 계약서에 따라 지하자원이용자들이 제안한 가격보다 높지 않은 가격으로 추출된 광물을 구매할 수 있는 선취권을 가지고 있다(운송비와 판매경비 제외).

카자흐스탄공화국은 지하자원이용에 포함되는 특정 기업내 소유권(주식)의 판매를 중지시키거나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자들에게 의해 제안된 기간과 조건에 뒤지지 않는 기간과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다(Table 3).

5. 지하자원 이용권 취득

다양한 형태의 지하자원 이용권 또는 계약서가 있다: 지하자원의 국가 수행 지질조사, 탐사, 생산, 그리고 탐사와 생산과 관련이 없는 지하시설의 건설 및 운영. 특히, 생산 라이선스의 경우 기한은 통상 25년이나 가 채매장량의 규모가 대규모일 경우 45년까지 가능하며, 기한 연장은 만료일 12개월 전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Table 4).

이전의 법률 구성과 비교하여, 새 법에서는 탐사와 생산 계약서가 분리될 것이며, 계약서는 양도될 수 있거나 법률상 승계를 받을 수 있다. 지하자원 이용권을 양도받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입찰 참여 또는 직접 협상.

5.1. 입찰 참여를 통한 지하자원 이용권 양도

입찰은 전문기관에 의해 수행되며, 입찰 정보 및 기간과 조건은 카작어와 러시아어로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매체에 발표되어야 한다.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입찰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Table 5).

입찰참여 신청시 문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주로 신청자 또는 신청 법인의 신상에 관한 것인 반면, 경쟁 입찰시에는 신청할증금과 개발부담금 등 입찰자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Table 6). 입찰은 다음의 경우에 무효화될 수 있다:

- 신청접수가 없을 경우
- 2개 미만의 신청일 경우
- 신청자 중 아무도 입찰에 참여가 허락되지 않은 경우
- 입찰 참여 승인된 신청자가 1인일 경우
- 하나의 경쟁 입찰만이 접수되었거나 남아 있는 경우

Table 4. Types of the subsurface use contracts under the new legis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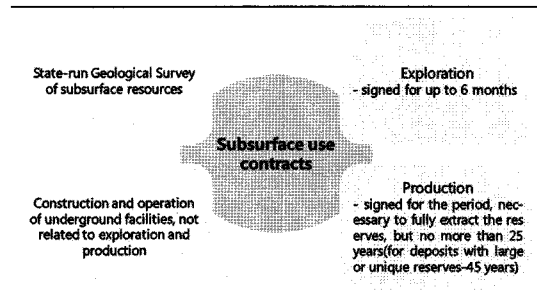


Table 3. Procedure for pre-emptive rights realization

Application for sale of intere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be prepared by the owner of the subsurface use right • To be filed in Kazakh and Russian languages • To be sent to the Competent body
Proposal to interdepartmental commission (I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ithin 5 days, Competent body to propose the IDC to consider purchasing the interest
Consideration by interdepartmental commi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ithin 30 days, the IDC must develop a decision to buy or to refuse buying the subsurface use right • IDC to prepare a protocol of the purchase decision and send it to the Competent body
Decision of the Competent Body to do the purch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ithin 5 days, IDC to prepare a protocol of the purchase decision and send it to the Competent body • To be directed to the authorized national company or other Government body, which will be authorized to make the purchase
Negoti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be conducted between authorized national company and the Seller of the subsurface use right • The purchase should be made on the terms and conditions, which are not inferior to other bidders' terms and conditions
Purchase by Republic of Kazakhst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ould be made within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decision on purchase

Table 5. Procedure for granting a subsurface use right in a tender

Preparation of the geological, mining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defining its pr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be prepared by the Competent body • The price is defined on the basis of historic costs by the Government • The fee for the information is not non-refundable
Announcement of the tender and its condi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ust be published in the nation-wide media in both Kazakh and Russian languages
Collecting applications to participate in a ten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deadline for applications can not be less than 1 month from the date of announcement of the tender • The receipt of application must be acknowledged by Competent body within 1 month after applications' deadline
Collecting competitive bi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deadline for collecting tender offer is 3 months from the date of tender announcement • A competitive bid may not be changed or withdrawn by applicant until the tender is finished
Ten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winner is defined on the basis of size of the subscription bonus and the proposed payments the local budget for the regional, social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 The tender must be conducted no more than 15 days after all competitive bids are received • The tender may be extended by no longer than a month
Results of the ten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be published in the nation-wide media in both Kazakh and Russian languages

Table 6. Application to participate in a tender and competitive bid

Application for participation in a tender	Competitive b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me of applicant, address, nationality (for legal entities); citizenship (for individuals) • Information about management and shareholders of the applicant, including the size of the shareholding • Information about previous activities of the applicant during the last 3 years • Name of the subsurface block, which is tendered • Copy of the confirmation of payment by the applicant of the tender participation fee (non-refund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posed amount of the subscription bonus and documents confirming funding (own capital or bank guarantees) • Amount of the payments to the local budget for social and economical development of the region and its infrastructure - to be specified in cash only • Obligations associated with attracting Kazakhstan employees and labour as a percentage of the total employees and labour • Obligations on training Kazakhstan personnel • Obligations associated with use of goods, works and services of Kazakhstan origin, as a percentage of the total value of the goods, work and services,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 work under contract • Obligations with regards to the accession to the Memorandum on Mutual Understanding On Implementation of the Transparency Initiative of Mineral Sector activities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prior to the signing of a given contract, except for competitive bids for obtaining subsurface use rights for underground water and commonly-occurring useful minerals • Copy of the confirmation of payment for geological information

5.2. 직접협상에 의한 지하자원 이용권 양도

광물자원의 탐사 및 생산을 위한 지하자원 이용권 양도에 관한 직접협상은 전문기관의 실무직업팀에 의해 수행되어 진다. 팀원은 전문기관에서 지명한다. 직접협상에 참여하기 위해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사람은 전문기관에 신청서를 보낸다. 탐사 및 지하자원 이용을 위해 공인기관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한 달내에 신청자는 특정 지하자원 부존 구역에 대한 지질정보를 구매하는 것이 허락된다. 전문기관은 신청자에게 신청이 제출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직접협상을 할지 안할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전문기관은 신청자에게 직접 협상할 날짜를 통보한다. 직접협상은 신청서가 제

출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수행되어야 한다. 협상기간은 전문기관이 연장할 수 있다.

직접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법인의 경우; 신청자 이름, 위치, 관할지역, 법인 등록 번호 및 납세자 등록, 경영인 및 그의 권한에 관한 정보, 주주 및 그의 보유분에 관한 정보, 법인의 상장증권에 관한 정보, 신청자의 협력단체에 관한 정보
- 개인의 경우; 신청자 성명, 주소, 시민권, ID 정보, 납세등록, 사업자 등록 정보
- 직접협상시 신청자를 대표할 경영인 또는 대표자에

관한 정보(그들의 권한을 포함한 정보)

- 신청자의 기술적, 행정적, 조직적 그리고 재정적 전문가 의견에 관한 정보(국영기업 그리고 상업성 확인을 근거로 지하자원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제외)

생산 계약서를 위한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 신청할증금 규모
- 계약서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총 물품, 작업, 용역의 백분율로서 카자흐스탄의 물품, 작업, 용역 사용과 관련된 의무
- 지역 및 기반시설의 사회경제적 개발을 위한 현지 예산에 대한 납입금 규모

지하자원 이용권 양도에 관한 직접협상은 의정서가 작성되어야 한다(고유의 의정서를 통해 승인되어야 함). 의정서는 실무작업팀 전원과 신청자의 공인 대표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신청자에게 지하자원 이용권 양도 결정에 관하여 의정서 서명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직접협상시 신청자가 제안하여 전문기관에서 승인한 지하자원 이용 기간 및 조건은 의정서와 더불어 계약서 및 작업계획안에 포함되어진다.

5.3. 탐사에서 생산단계로의 전환시 지하자원 이용권 양도

광상을 탐사하고 평가했던 지하자원 이용자는 입찰 참여없이 직접협상을 통하여 생산 계약서를 받을 우선권을 갖는다. 그런 사람 또는 사람들은 탐사 계약이 완료되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직접협상을 하기 위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관할관청은 일반적으로 생산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명시해야 한다:

- 신청할증금 규모
- 계약서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총 물품, 작업, 용역의 백분율로서 카자흐스탄의 물품, 작업, 용역 사용과 관련된 의무
- 지역 및 기반시설의 사회경제적 개발을 위한 현지 예산에 대한 납입금 규모

제안된 조건에 신청자가 동의하면, 양측은 직접협상의 의정서에 서명한다. 신청자는 의정서 서명 후 1년 기간 동안 필요한 기획 서류, 작업 계획 그리고 가계약서(draft contract)를 준비해야 한다. 계약서가 의정서 서명 후 24개월 동안 체결되지 않으면, 신청자는 생산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 우선권을 상실한다. 신청자가 전문기관에 의해 제안된 조건들에 동의하지 않으면, 관할관청은 생산권 양도를 취소한다. 그럴 경우, 전문기관은 지하자원 조사권역을 3개월 동안 입찰에 붙일 것이다. 탐사에 참여했지만 생산 계약서 체결에 실패한 사람 또는 사람들은 집행된 탐사경비를 변상받게 될 것이다.

6. 지하자원 이용 계약 체결

지하자원 이용권 취득 후, 계약서가 서명되어야 한다(Table 7). 가계약서는 직접협상시 권리를 획득한 낙찰자 또는 단체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전문기관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계약서는 카작어와 러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양측이 동의한다면, 다른 언어로 번역될 수 있다. 계약서 조항은 경쟁입찰 또는 직접협상시 명기된 것들보다 카자흐스탄에 유리할 수도 있다. 계약서는 지질학적 또는 채굴 배정 및 작업계획과 같은 추가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작업계획과 함께 가계약서는 탐사와 지하자원 이용 공인기관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법률, 환경 그리고 경제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받아야 한다. 모든 전문가 의견은 심사를 위한 계약서 첫 제출 후 2개월 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심사와 전문가의 결론에서 지적된 모든 의문사항들이 해결된 후, 사업계획과 함께 가계약서, 모든 승인된 기획 서류, 협약 및 심사 결과를 전문기관의 최종 심사를 위해 송부해야 한다. 전문기관은 제반 서류를 받은 후 2개월 내에 계약서의 최종적으로 승인된 본문을 완결지어야 한다.

6.1. 작업 프로그램(Working program)

작업 프로그램은 기획 문서내 명기된 요소들을 근거로 하여 구성된 문서로서, 계약기간동안 지하자원 이용자의 계획을 결정한다. 보편화된 생산량과 경비로 지하자원 이용 공정을 관리하는 조항들을 포함한다.

작업 프로그램은 계약서에 첨부되는 필수 부록으로 인정될 것이며, 탐사 및 지하자원 이용 공인기관과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정 작업은 작성된 가계약서의 전문가 심사 이행과 동시에 수행될 것이다.

6.2. 탐사 작업 프로젝트(Project of exploration works)

직접협상에서 지하자원 이용권을 획득했던 낙찰자 또는 단체는 탐사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탐사 작업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한다.

Table 7. Draft documents necessary to sign a subsurface use contract

	Working program	Project of exploration works	Project of appraisal works	Draft documents on conducting mining works
Content	Working program is a document that determines the plans of the subsurface user for the contract period. It includes the conditions of conducting the operations on subsurface use with the generalized production volumes and the expenditures	The project of exploration works contains the programme of study of the exploration territory, including the modern and precise methods of exploration and testing. It must cover the entire territory of the exploration area, and contain the financial part with regards to the expenditure on performing prospecting and discovering works	The project of appraisal works must be prepared in case of deposit discovery. It determines procedure and volumes of geological and exploration works for the purpose of the appraisal of the discovered deposit	These include: project of industrial development of the deposit, which must include calendar plan of mining and production works, as well as technical solutions to ensure the output, measures on ensuring efficient use of subsurface, safety measures, environmental measures; activities on reclamation of the land; funding of the planned works with annual break-up; and feasibility study
Prepared by	The tender winner or the party, which obtained the subsurface use right in direct negotiations	The tender winner or the party, which obtained the subsurface use right in direct negotiations	The tender winner or the party, which obtained the subsurface use right in direct negotiations	The tender winner or the party, which obtained the subsurface use right in direct negotiations
Examined by	Authorized body for exploration and subsurface use	Central commission for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minerals (CCE); Authorized bodi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ndustrial safety, public health and sanitation expertise	Central commission for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minerals (CCE); Authorized bodi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ndustrial safety, public health and sanitation	Central commission for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minerals (CCE); Authorized bodi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ndustrial safety, public health and sanitation, and economic and budget planning
Approved by	Authorized body for exploration and subsurface use	Authorized body for exploration and subsurface use	Authorized body for exploration and subsurface use	Authorized body for exploration and subsurface use
Timing	Up to 1 month	Up to 6 months	Up to 5 months	Up to 18 months

프로젝트는 최신의 정밀한 방법을 통한 탐사와 실험을 수행하는 탐사 영역에 대한 가장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계약서상의 전 탐사 지역을 대상으로, 효과적이고 복잡한 연구를 확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또한, 조사 및 광상부존 확인에 드는 경비와 관련된 재정적인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환경 분야
- 산업 안전 분야
- 공중 보건 및 위생 분야

프로젝트 개발 기간은 직접협상 의정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또는 낙찰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지 말아야 한다. 프로젝트는 6년간 유효하다.

6.3. 평가 작업 프로젝트(Project of appraisal works)

프로젝트는 광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입안되며, 광상

평가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지질 및 탐사 작업의 절차와 규모를 결정한다.

상업성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작업일 30일내에 전문기관에 보고해야 하고, 전문기관은 한 달이내에 평가 작업 허가를 발표해야 한다.

작업 계획 변경은 평가작업 단계로의 전환할 경우에 가능하며, 변경내용은 계약서상에 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 및 그 기간은 탐사 및 지하자원 이용 공인 기관에 의해 설정되며, 상업성 있는 광상 발견에 대한 확인은 지하자원 이용자에 의해 발표된다.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환경 분야
- 산업 안전 분야
- 공중 보건 및 위생 분야

프로젝트는 평가 단계에서 작업과 관련된 재정문제를 포함해야 하며, 매장량 계산과 광상의 경제성 및

기술적 특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 진행된다. 고체 광물 (Solid minerals)에 대한 평가 작업은 시험 생산 프로젝트를 포함할 수 있는데, 그 규모와 기간은 광상의 예비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평가 작업과 시험 생산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제출일로부터 한 달간 광물 탐사 및 개발 중앙위원회(Central commission for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minerals, CCE)에 의해 조사되며, 작업일 15일 이내에 탐사 및 지하자원 이용 공인기관이 승인한다. 프로젝트의 승인 및 시행 기간은 평가 단계 진입 결정이 난 이후 5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6.4. 채광작업 수행을 위한 기획 문서(Draft documents)

생산 계약서에 서명하고 등기하기 전에, 직접협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낙찰자 또는 단체는 해당 기획 문서를 전개해야 한다. 이 문서에는 생산량 확보를 위한 기술적 해답, 지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보증하는 방안, 안전 대책, 환경대책; 토지 복원 활동; 연간 분쇄관련 계획 작업의 자금; 그리고 개발타당성 조사 뿐만 아니라 채광 및 생산 작업의 일별 계획을 포함하는 광상의 산업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기획 문서는 지하자원을 완전히 추출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되지만, 25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규모가 크거나 굉장한 매장량을 보유한 광상에 대해서는 예외적이지만, 45년을 초과해선 안된다. 기획 문서의 작성과 협정은 직접협상 의정서 서명 또는 입찰 결과 발표 날로부터 18개월을 초과해선 안된다.

고체 광물의 산업적 개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제출 일로부터 한 달 동안 CCE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지며, CCE로부터 건의를 받은 날로부터 작업일 15일내에 탐사 및 지하자원 이용 공인기관에 의해 승인이 이루어진다.

7. 결 언

(1) 자국내 중요한 광물자원이 저가에 외국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구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 정부의 선취권 행사 권한 보유함.

(2) 외국인 투자자가 광권을 매입할 당시에 설립한 지역의 해외법인의 지분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도 정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2007년부터는 광권 매입후 2년 동안은 매각을 금지함.

(3) 카자흐스탄 의회는 2007년 10월에 지하자원법을 개정하여 ‘전략적(strategic) 광구로서 국가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정부가 외국 투자자와의 당초 계약에 대해 조건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4) 투자기업이 환경 문제 등 다양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사업 중단은 물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 보유함.

(5) 탐사(시추) 관련하여 환경 영향 평가, 생태 영향 평가 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등 각종 정부 규제를 강화함.

사 사

본 연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출연연구사업인 ‘해외광물자원 확보 기반구축 및 부존평가’ 과제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참고문헌

Draft Law On the Subsurface and Subsurface Us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07).
 Lee, J.H., Kim, I.J., and Kim, B.C. (2007) The Scheme of the Mineral Resources and Investment Opportunity, the Republic of Kazakhstan.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v. 40, p. 503-511.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2009) *The Natural Resources and Investment Environment of The Central Asia*.
 Visor Capital (2009) ENRC and Kazakhmys keeping their chins up.

2009년 7월 25일 원고접수, 2009년 8월 17일 게재승인